

(붙임 1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

I 개정 필요성

-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개정*」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에 반영

- * 1.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개정(안)」 (금융기획팀-668, 2023.8.25.)
- 2.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표준안 개정」 (금융기획팀-673, 2023.8.25.)

II 주요 개정 내용

-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「특별지원부문」의 운용기간을 상시화(제6조)
 - 특별지원부문의 운용기한(2021.9.1.~2023.8.31.) 삭제
- 아울러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략·특별·일반 지원 한도를 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 설정(제5조, 제6조)
 - 전략지원부문 운용규모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의 40% 이상 설정하도록 최소비율 명시

III 시행일

- 2023.9.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
 - 단, 제5조(전략지원부문)제5항의 시행일은 2023.11.1일